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1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,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 주요골자

○ 개발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및 용자 확대

- 개발기금 대상사업중 농·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
-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유통안정을 위해 3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도록 함

○ 운용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

- 이 율 : 연 5% ⇒ 연 3%
- 상환기간 : 1년만기 일시상환 ⇒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

○ 일부 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

- 조문 규정중 “운영” ⇒ “운용”으로 하고
-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⇒ 충청북도농어촌 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로 함

 의안전문 :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농·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” 를 “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” 로, “운영관리” 를 “운용관리” 로 한다

제2조제2호중 “농촌소득 개발” 을 “농·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어촌소득 개발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운영관리” 를 “운용관리” 로, “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” 를 “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로 하고, 동조제3항제1호중 “운영계획” 를 “운용계획” 으로, 동항제3호중 “개발기금운영” 을 “개발기금운용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·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

제7조제2항제2호중 “운영자금” 을 “운용자금” 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,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융자금의 이자는 시설자금은 연 3%로 하고, 운영자금은 연 5%” 를 “융자금의 이자는 연 3%” 로 한다.

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” 를 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” 로 한다

제10조제1항중 “개발기금운영” 을 “개발기금운용” 으로, “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” 를 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” 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” 를 “특별회계의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·제3항 및 제14조중 “운영” 을 각각 “운용” 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용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농·수산업의 경쟁력 강화</u> 와 <u>농어촌소득개발</u> 을 위한 기금(이하 “개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<u>운영관리</u>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</u> 과 ----- ----- <u>운영관리</u> -----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개발기금”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<u>농촌소득 개발</u> 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농·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어촌소득 개발</u> 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.
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개발기금 <u>운영관리</u> 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개발기금 운영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(생략)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개발기금 <u>운영계획</u> 수립에 관한 사항 2. (생략) 3. 기타 <u>개발기금운영</u> 에 관한 사항	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 ----- <u>운영관리</u> ----- ----- <u>개발기금</u> ----- <u>운영심의위원회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1. ----- <u>운영계획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 <u>개발기금운영</u> -----
제5조(대상사업)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~2 (생략) 3. 기타 <u>농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	제5조(대상사업) ----- ----- 1.~2 (현행과 같음) 3. <u>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·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</u>
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(생략) ② <u>융자금</u> 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<u>운영자금</u> 은 농어민, 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300만원 이상 1,000만원 이내로 한다. <신설>	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운영자금</u> ----- ----- <u>다만,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, 운영자금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.</p> <p>②융자금의 이자는 시설자금은 연3%로 하고, 운영자금은 연5%로 하되,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.</p>	<p>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.</p> <p>②융자금의 이자는 연3%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9조(융자금의 회수) ① (생략)</p> <p>②시장·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융자금의 회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개발기금운영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업무는 농정국에서 관장한다.</p>	<p>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개발기금운용 -----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특별회계의 업무는 농정국에서 관장한다.</p>
<p>제11조(세입·세출) 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각호중 해당되는 사업비와 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지출한다.</p> <p>③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.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기금주무과장, 수입금출납원은 기금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11조(세입·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운용 -----</p> <p>③ ----- 운용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14조(준용규정)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.</p>	<p>제14조(준용규정) ----- 운용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第133條(財産 및 基金의 設置)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,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, 基金의 設置·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□ 지방재정법

第110條(基金의 運用등) ①地方自治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特정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.